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6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6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 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생략)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하고, 신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체적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u> 제85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7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u>
--	--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5조제1항¹⁾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에만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동 지침은 ‘격리’와 ‘강박’을 각각 정의²⁾하고,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시행 원칙, 시행시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2) 「격리 및 강박 지침」

-격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 공간을 제한하는 것

-강박: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상 신체의 자유³⁾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강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고, 실제 신체적 제한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⁴⁾도 있는 점에서 그 시행에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6개 병원에서 격리·강박 절차 위반, 강박 환자 활력징후 체크 소홀, 격리강박실 안전 및 위생기준 미흡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고,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⁵⁾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①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 보호사 등 격리

3)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 2024년 정신병원 격리실 침대와 벽에 끼어 환자가 사망함.('정신병원 침대와 벽에 끼어 사망한 환자...1.2억 배상 판결', 한겨레, 2026. 4. 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607.html)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25. 4. 22.)

· 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⑤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을 포함함.

□ 다만, 개정안 제85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내용임에도 해당 형벌의 구성요건인 안 제75조제2항 후단에서는 허용되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⁶⁾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⁷⁾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신체적 제한의 기본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현행법 제86조제10호⁸⁾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6)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pp. 29-30.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형벌의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7)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p. 3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현행 처벌규정과의 형평성 및 행위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⁹⁾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안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적용의 적절성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당사자 등의 의견이 상이하고, 정신 응급상황에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의 보호 목적 등을 위하여 격리·강박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부재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령에는 최소한의 필수기준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지침 준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고는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므로, 이를 도외시한 채 의료인에 대하여만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9) 서미화의원안(제2202686호), 김예지의원안(제2203242호), 전진숙의원안(제2203832호)

- (대한의사협회) 격리·강박에 대한 규제 사항이 현행 법령에 충분히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위반 시 처벌 조항까지 두는 것은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음.
- (대한간호사회) 정신의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및 근무 여건의 한계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가 어려우므로 벌칙 조항 신설에 앞서 인력 확충이나 종사자 교육 강화,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중심의 단계적 관리 체계가 바람직함.
-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신 응급상황 대처에 대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입원 기피나 조기 퇴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 인력 및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한작업치료사회) 신체적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비약물적 중재를 우선 시행하도록 절차 근거 명시 및 중재 가능한 전문인력 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보건복지부령에 신체적 제한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전문가와 당사자 등과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회) 신체적 제한의 기준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인력 및 환경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상적으로는 격리·강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고려할 때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